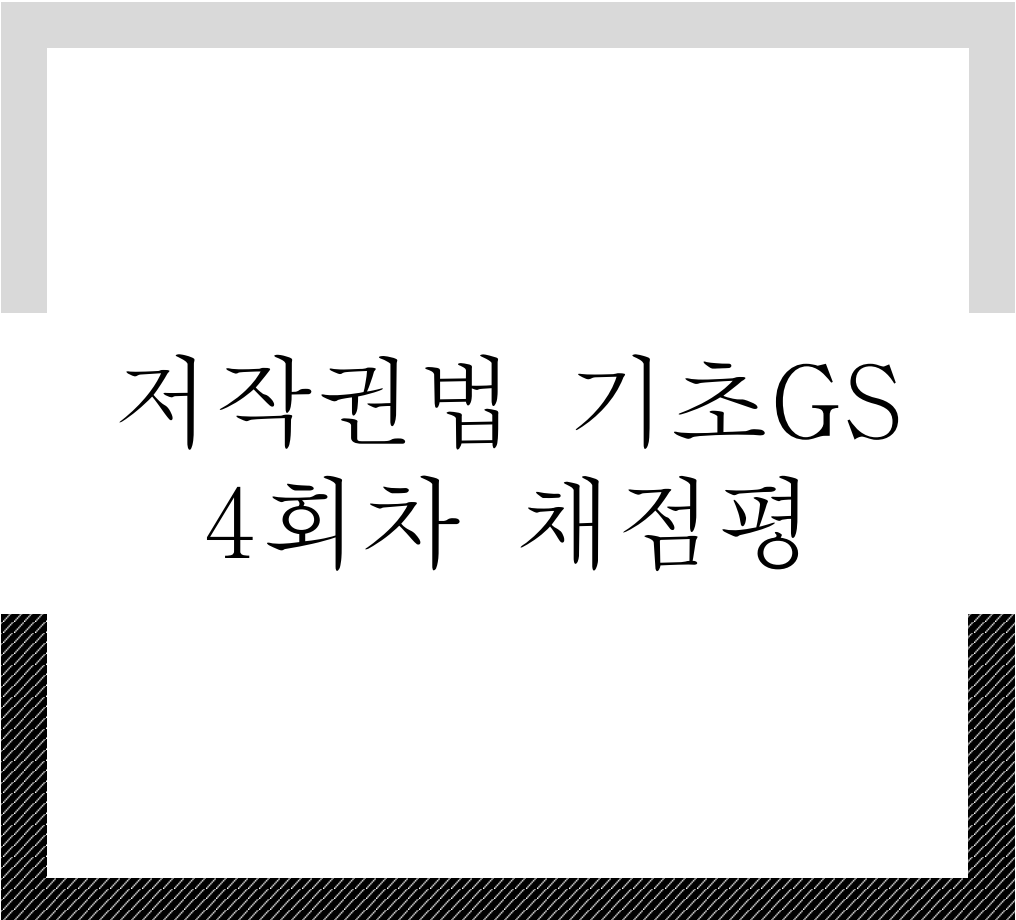


김선화 / 3월+4월 / 기초GS / 4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56714	19	10.5	0	0	29.5	1	1.43%	70
548731	17	11	0	0	28	2	2.86%	
548660	18	10	0	0	28	2	2.86%	
548623	16.5	11	0	0	27.5	4	5.71%	
556282	16.5	11	0	0	27.5	4	5.71%	
559009	16	10.5	0	0	26.5	6	8.57%	
556085	15.5	10.5	0	0	26	7	10.00%	
557838	16.5	9	0	0	25.5	8	11.43%	
550636	15.5	9.5	0	0	25	9	12.86%	
559332	15.5	9.5	0	0	25	9	12.86%	
557828	13.5	11	0	0	24.5	11	15.71%	
556412	14.5	9.5	0	0	24	12	17.14%	
559142	14.5	9.5	0	0	24	12	17.14%	
556312	14.5	9	0	0	23.5	14	20.00%	
557686	11.5	11.5	0	0	23	15	21.43%	
556524	12.5	10.5	0	0	23	15	21.43%	
556434	12.5	10.5	0	0	23	15	21.43%	
559189	13	10	0	0	23	15	21.43%	
558124	13	9.5	0	0	22.5	19	27.14%	
559375	11.5	10.5	0	0	22	20	28.57%	
561836	12.5	9.5	0	0	22	20	28.57%	
556423	13.5	8.5	0	0	22	20	28.57%	
559078	9.5	12	0	0	21.5	23	32.86%	
559756	11.5	10	0	0	21.5	23	32.86%	
557869	14.5	7	0	0	21.5	23	32.86%	
557909	12	9	0	0	21	26	37.14%	
556377	11	9.5	0	0	20.5	27	38.57%	
556363	11	9.5	0	0	20.5	27	38.57%	
559305	11	9.5	0	0	20.5	27	38.57%	
558051	11	8.5	0	0	19.5	30	42.86%	
555744	10	9	0	0	19	31	44.29%	
549662	10.5	8	0	0	18.5	32	45.71%	
558077	15.5	3	0	0	18.5	32	45.71%	
556324	12	6	0	0	18	34	48.57%	
557074	12	6	0	0	18	34	48.57%	
558614	12	6	0	0	18	34	48.57%	
560892	14	4	0	0	18	34	48.57%	
558698	17	1	0	0	18	34	48.57%	
548598	12	5.5	0	0	17.5	39	55.71%	
557793	17	0.5	0	0	17.5	39	55.71%	
554788	8.5	8.5	0	0	17	41	58.57%	
556839	10	7	0	0	17	41	58.57%	
556383	12	5	0	0	17	41	58.57%	
557833	12.5	4	0	0	16.5	44	62.86%	
558697	16.5	0	0	0	16.5	44	62.86%	
560901	9	7	0	0	16	46	65.71%	
557075	10.5	5.5	0	0	16	46	65.71%	
534397	8.5	7	0	0	15.5	48	68.57%	
559712	9	6	0	0	15	49	70.00%	
556590	11.5	3.5	0	0	15	49	70.00%	
559471	0	14	0	0	14	51	72.86%	
556409	14	0	0	0	14	51	72.86%	
560897	14	0	0	0	14	51	72.86%	
556397	4.5	9	0	0	13.5	54	77.14%	

559788	13	0	0	0	13	55	78.57%
559559	6	6.5	0	0	12.5	56	80.00%
558518	8.5	4	0	0	12.5	56	80.00%
556358	10.5	2	0	0	12.5	56	80.00%
557810	11	1.5	0	0	12.5	56	80.00%
559483	5.5	6	0	0	11.5	60	85.71%
558030	7.5	4	0	0	11.5	60	85.71%
556685	8.5	3	0	0	11.5	60	85.71%
556948	9.5	2	0	0	11.5	60	85.71%
556203	11	0.5	0	0	11.5	60	85.71%
559440	11.5	0	0	0	11.5	60	85.71%
557105	9.5	1	0	0	10.5	66	94.29%
556301	10.5	0	0	0	10.5	66	94.29%
556376	9	1	0	0	10	68	97.14%
556443	6	3.5	0	0	9.5	69	98.57%
557024	4	5	0	0	9	70	100.00%



저작권법 기초GS
4회차 채점평

김선화 변리사

문제 1

공동저작물

설문 1

• 먼저 이번 문제에서는 2차적 저작물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주논점이었습니다. 설문(1)에서 이 사건 극본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임이 전제로 문제에 주어졌는데, 이를 간과하고 상당한 지면을 소요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초반에 흔히 하시는 실수로, 문제에 주어진 전제와 조건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잘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설문 2

• 이번 설문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을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답안에 없는 공동창작의사의 판단시점을 추가로 적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주논점은 아니어서 따로 점수를 더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관련 판례 첨부하겠습니다.

(4) 선행저작자의 공동창작 의사 판단시점

“선행 저작자에게 공동창작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창작 행위가 시작될 무렵인 이 사건 집필계약 및 연출계약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의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2022가합550734, “안나” 사건)

• 원칙은 창작 행위가 시작될 무렵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 판례에서는 그 시점을 계약 체결시점으로 생각해 둘 다 맞는 표현임을 안내드립니다.

설문 3

• 마지막 설문은 공동저작물의 권리 행사 방법(제 48조 1항)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고 게시하는 등 이용하는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행위의 주체가 병과 정으로 나뉘고 행위도 양도/게시로 나뉘므로 각각 꼼꼼히 판단해서 따져주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총 평

안녕하세요 이번달 채점을 담당하게 된 채점자 유화정입니다.

정신없는 3월에 선택과목 지에스를 시작하신 성실함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이번주차는 제출해주신 인원이 많지 않아서 한 분 한 분 꼼꼼히 코멘트 남겨 드렸으니 답
안지 잘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정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ㅎ)

일단 대부분의 학생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많은 분량으로 작성해주셔서 칭찬해드리고 싶습
니다!!! 답안 작성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목차나 논점파악이 수준급이
신 분들도 계신데, 저작권의 경우 꾸준히 조금씩 하시면 금방 감 잡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모두모두 이번 달 함께 파이팅 해보자구요!!

문제 2

편집저작물/허위공표죄

설문 1

- 이 문제는 설문(1)에서 편집저작물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사안포섭을 연습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주논점 외에 어문저작물 여부를 검토한 분께는 부분점수 0.5점 부여하였습니다.
-

설문 2

- 설문(2)에서는 편집저가 공표된 경우 그 원저작물도 같이 공표된 것으로 본다는 제 11조 4항의 원저작물 공표 간주 조항에 대한 판단을 연습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출판권 설정을 전제로 제 11조 2항의 묵시적 동의를 근거로 푸신 분들께는 정답을 맞춘 것과 동일하게 점수 부여해드렸습니다.

설문 3

- 설문(3)에서는 허위공표죄의 취지와 관련하여 공표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점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출제되었습니다.
- 문제의 최종 어미에서 허위공표죄의 성립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장의 타당성을 묻는 것에 주의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총 평

논점이 모호하지 않고 명확했기에 논점추출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나, 소설문의 개수가 많고 묻는 바가 많아서 시간관리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항상 1문제를 100퍼센트 잘 푸는 것 보다 모든 문제를 50퍼센트로라도 다 풀어내는 것이 낫습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

[문제 1] 19

I. 설문 (1)

1. 2차적 저작물 여부.

1) 의의 (제5조 제1항)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경,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다.

2) 판단기준 판례

2차적 저작물로 보호 받기 위하여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 유지하고 이것에 사리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

1.5

2. 사안

2이 이 사건 극본의 주된 내용과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대사를 문대르 작성한 것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설의 문학적 특성에 맞추어 일부 각색하고 인물들의 구체적이고 심리묘사나 허구적 요소를 가미하여 집필한 것은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3. 결론

2이 소모 집필행위는 극본에 관하여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것이다.

1

II. 설문(2)

1. 공동저작물

1) 공동 저작물의 의미 : 제 2조 제1호

공동 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2) 공동 저작물의 성립요건

① 2인이상이 창작에 관여할 것. ② 공동으로 창작할 것

3) 공동창작의 의사의 의미

공동 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
를 말한다. 1.5

2. 공동창작의사 인정요건과 판단시점

1) 공동창작의사 인정요건

선행저작자의 창작부분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연결된 저작물 완성의사나
후행저작자는 선행저작자 창작부분 기점으로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연결된 저작물 완성
의사가 있을 것이 필요하다.

2) 선행저작자의 공동창작의사 판단시점 (판례)

창작행위가 시작될 무렵에 개별적 시점은 중립적이며 판례에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달라질 수 없다. 1.5

3. 사안.

1) 甲이 공동저작자 인지 여부 - 소극.

甲은 선행저작자로 창작행위가 시작될 무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甲은 乙의 계약에서

단독으로 집필하여 완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체결했다.

계약 해지 임의 통보를 받고 자신이 작성한 부분을

이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공동창작의사 판단

시점에 단독으로 완성하려는 의사와 분리의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연결된 저작으로 완성의사가 없이

공동저작자로 보기 어렵다 22) 乙이 공동저작자 인지 여부 - 적극 **공동저작자 X.**기준 甲의 극분을 기준으로 하여 후반부 **공동창작의사 O**

추가 집필하여 최종완성 한 것으로 乙은

후행저작자로서 선행저작물에 분리의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연결된 저작으로 완성의사가 있는 것으로볼 수 있다. 1

4. 결론

甲과 乙의 공동창작의사 긍정으로 경향있을 때

→ 甲은 이 사건 극분의 공동저작자는 아니다.

해당 저작물은 공동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1

III. 쌍문(가)

1. 공중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482 1항

공중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다른 저작재산권자 등의 동의 없이는 지분양도나 질권 목적이 될 수 없다.

2. 482 규정 위반시 권리 행사 유효 여부 - 2주

482 1항 일방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저작재산권자 등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무효이다.

3. 저작인격권의 공표권

1) 공표권 (제112조 제1항)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2) 공표 (제122조 제25항)

공표는 공표, 공공전시, 전시 등에게 공개하는 것을 저작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저작재산권의 공공전시권

1) 공공전시권 (제118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공에 상설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2) 전시권 (제 23 조 제10항)

전시는 공공전시 중 공공의 구성원이 개별적 또는 단체적 시선으로 상설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 말한다.

5. ~~10년~~1) J의 행위 법적의의

甲과 乙 공동저작물 임에 乙은 甲 동의없이 J에게
 양도하였고 이는 48조 1항에 따라 무효이다.

J의 행위로 저작권자가 아니다.

甲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은 甲의 저작인격권
 공표권과 저작재산권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6. 10년.

J의 행위 법적의의는 저작권자가 아닌 J의 침해

행위로 볼 수 있고 甲의 주장을 타당하다.

0.5

+ 兩 행위도 판권침해!

I. 서문 (1)

1. 저작물의 의미 - 법 2조 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0.5

2. 2차적 저작물 ~~중~~ 편집저작물

다각적 접근

(1) 의미 - 법 2조 18호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구성,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창작성 판단기준 - 判例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도 별개로, 편집물을 작성한 의도에 따른 독특한 편집 방식, 소재가 갖는 내연된 것을 넘어 창조적으로 선택, 배열된 경우, 독자적인 창작성이 인정된다.

2

3. 수필집의 창작성 여부

1) 수필집은 소재가 될 원작들 중 甲의 유년-청년-정년-노년에 접할만한 작품들을 선별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나름의 기조를 보인다

2) 배열 역시, 후자의 흐름에 대응시켜 독특한 구성을 띤다.

(2) 공표 동의 추정 - 법 11조 4항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그 원저작물은 공표된 것으로 본다.

(3) 서안

1) 윤작 미공표

甲의 윤작들은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공표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이다.

2) 수정본 공표

乙의 수정본 (편집저작물)은 甲의 동의를 얻어 공표되었기
때라서 그 원저작물은 공표된 것으로 본다.

3) 공표권 소진

윤작이 공표 간주됨에 따라 공표권이 소진되었으므로, 그 후
원작을 별도로 게시했다 하여 공표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윤작에 대한 공표권 침해가 아니다.

II. 실문 (3)

1. 허위공표죄 의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러한 범용에 처한다

2. 허위공표죄 취지 - 예외

저작자, 저작자 아닌자나 인격적 권리 뿐 아니라, 저작자 명예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3. 저작권 타당성 검토

(1) '원작이 공표됨'

원작은 수록적 공표에 의해 공표권주 되고는 타당하다

(2) '공표권주인 허위공표죄 보정'

1)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예외

공표의 문헌적 가치와 저작권법 131조 1항 1호의 임의적 처분 비추어 보면, 저작자 허위표시 태성이 되는 저작물이 공표된 적 있어도 위 규정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2) 사안

① 원작자 甲이 乙나 丙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출판하는 것은

허위공표 행위이다.

② 원작이 공표되었지만,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저작권법 131조 1항 1호 ^{공표권} 취지를 생각하면 허위공표죄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4. 결론

보정 가능하다